

◆ 교육칼럼 ◆

미래 사회 위한 우리 교육의 과제와 변화의 필요성

본지는 신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과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숲 기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서울 경기고등학교 이기성 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제 1 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주체는 곧 인적자원인 사람이요, 결국 사람은 교육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학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은 각 개인의 타고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한두 가지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교육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에 이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교육목적 본래의 가치 추구보다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신분 상승의 이동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부단한 학력경쟁을 낳게 되고, 학교교육도 삼급학교 진학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학력관이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풍토>

능력보다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실력보다 학벌이나 학연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구조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학교교육의 부실화 등과 얽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산물이 병적인 사교육 팽창이다. 혈연이나 지연은 고정불변의 것이고 학력과 학연만이 유일하게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학벌 중심 사회는 교육수요자들의 높은 교육열로 나타나고 성적은 대학입학의 열쇠이고 대학진학은 신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교육을 사회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잘못 인식하여 사교육이 더욱 병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사회적 성취가 가능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구조와 풍토가 조성될 때,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학교교육의 경쟁력도 높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학교의 자율화>

우리는 그 동안 교육 문제를 교육 논리로 다루기보다는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로 풀려는 경우가 많이 보아왔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이나 요구와는 관계없이 무리한 정책과 시책이 남발되고 변경되어 교육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에서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사람은 올바른 품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지니고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보아 지나치게 능률만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기본 전제인 인성 교육을 도외시키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은 교육논리에 의한 자율화의 바탕위에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시와 통제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를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보다 행정이 강화되면 교육은 위축된다. 행정은 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조직은 그 특성상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단위 학교에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서 본다면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다양해지는 사회 구조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부분도 학교에 더욱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자율화는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교원 인사와 교육 재정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이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 인사가 지금처럼 경직되어 있고, 학교 시설이 획일적이며, 학생 수용 위주의 학급편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교원 인사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와 개별학습이 가능한 교과교실제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반 시설과 함께 근본적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하다.

<다음 호에 계속>

약력

학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서울 경기고등학교 교감
서울 중앙중학교 교장
서울시 강서,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현재 서울 경기고등학교 교장



이기성(李基成)
서울 경기고등학교 교장

◆ 교육법률산책 ◆

학생들의 '일조권'은 인정되지 않는가?



김도현 변호사
dhkim@shinkim.com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대학 졸업(1999)
북경화공대학 연수(1998)
한국해양대학교 형인물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상해 화동정법대학 연수(2008)
<경력>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부산지방법원청, 의정부지방법원청 고양지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저서 : '중국법정직접' (2009, 법문사)

어느 날 국립 A 초등학교의 바로 옆에 새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알아보니 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라서 완공될 경우 A 초등학교의 운동장 일부 및 건물의 상당 부분에 햇빛이 들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A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청에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아파트는 완공되었고, 실제로 A 초등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향유하던 햇빛, 즉 일조이익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으며 이에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인 B 회사를 상대로 B 회사가 A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조이익(日照利益) 혹은 일조권(日照權)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 기한 권리이다.

즉,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준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조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조권은 대부분 일조권 침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충돌하게 된다. 본 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자인 B 회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얻어 아파트를 신축하

는 것이므로 B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조이익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 무조건 B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B 회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권리간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우리 법원의 기준은 이와 같은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기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호 판결 등 참조). 즉, 일도양단적으로 일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여러 가

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이익을 상실하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법원이 일조권의 향유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일조권의 향유주체를 '토지 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토지나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 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 A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일시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조권을 향유하는 주체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일조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시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지위가 일조권 향유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0도회 회전 이노체어

이노체어와 함께라면 허리나이가 젊어집니다.

일반의자 기능

간이침대 기능

스트레칭 기능

백인운동 기능

축적 제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고객 상담

032-624-2636